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·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

제정 1999년 5월 4일 규칙 제395호 개정 2001년 11월 21일 규칙 제484호 일부개정 2020년 11월 6일 규칙 제889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(이하 "협의회조례"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)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회 설립기관의 장(이하 "설립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조(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)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(이하 "설립사실통보서"라 한다)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. 〈개정 2001. 11. 21〉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 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,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(이하 "설립증"이라 한다)을 교부하거나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 11. 21〉
 -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적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를 협의

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

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 11. 21〉

-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11. 6〉
- 제4조(협의회 가입,탈퇴원서) 협의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[본조신설 2001. 11. 21]

- 제5조(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)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,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. 〈개정 2001. 11. 21〉
- 제6조(협의회 설립사실 보고)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·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 고.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, 11, 21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1. 11. 21 규칙 제484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. 11. 6 규칙 제889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〈신설 2001. 11. 21〉

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

명	칭	
	근무부서	
대 표 자	직 급	
	성 명	
<u>ই</u>	원	외 명
	일 시	
설립총회	장 소	
개최현황	참석회원수	외 명
	결의사항	

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사실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 ○ ○ ○ 귀하

〈첨부서류〉

- 1.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
- 2. 협의위원명부·회원명부(소속기관 및 근무부서, 직급, 성별, 성명, 전화번호 기재) 각1부
- 3.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

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·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

[별지 제2호서식] 〈신설 2001. 11. 21〉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

명	칭	
	근무부서	
대 표 자	직 급	
	성 명	

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○ 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(기관명) 인

[별지 제3호서식] 〈신설 2001. 11. 21〉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

명	칭	
	근무부서	
대 표 자	직 급	
	성 명	
보완을 요	하는 사항	
보 완	이유	
보 완	기 한	

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(기관명) 인

[별지 제4호서식] 〈신설 2001. 11. 21〉

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(탈퇴)원서

소	속	
직	급	
성	명	성 별
		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에(서)가입(탈퇴)하고자 합니다.
		년 월 일
		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000)공무원	직장협의회대표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 〈개정 2001. 11. 21〉

제○회 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

1. 일 시 :
2. 장 소:
3. 참 석 : 명(협의회 명, 설립기관의 장 등 명)
○ 대표자 및 협의위원
○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
4. 협의내용
5. 합의사항
"별지참조"
6. 기타 토의사항 *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"대표자"및 "협의위원"의 성명을, 기관장(대리시
수임자) 및 관련공무원은 직·성명을 기재

[별지 제6호서식] 〈개정 2001. 11. 21〉

제 ○ 회 ○ ○ ○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

	제	0 3	회	00	○ 공	무원	직장	협의	회	협의	게서	합의	한	사항	은
다음과	같다.														

0

0

0

년 월 일

○○○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설립기관의 장 이이이 (서명 또는 날인)

[별지 제7호서식] 〈개정 2001. 11. 21〉

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

(설립기관명)

					설	립				미설립				
	직장 협의회 명칭		대표자					Š	회원		회원			
연번		그무			협의 위원수	설 립 일	계	가입	가입대상(C)		사유	계	가입	가입
	(소속 기관)	<u> </u>	일	(A)	금지 (B)	가입	미가입		(A)	금지 (B)	대상 (C)			

※ 공무원수 A=B+C